
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보완대책”을 “보완대책,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중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, “지원 및”을 “지원,”으로, “마련”을 “마련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”으로 한다.

6. 「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통상피해지원단) ①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상피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1. 통상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·분석
2. 통상피해 지원방안의 수립
3. 통상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
4. 통상피해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
5.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

파악·점검

6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

③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상 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2. 제1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3. 국제금융·통상·해외지역·국제정치·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대외경제정책연구원·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4. 그 밖에 통상·무역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4.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· 비준(批准)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, 통상조약 관련 국내 <u>보완대</u> <u>책</u>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 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 회를 둔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완대</u> <u>책,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</u> <u>원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능) 통상조약 국내대책위 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 <u>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</u> <u>법률</u> 」에 따른 통상피해지원 <u>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</u> <u>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 7. ----- <u>제6호</u> ----- ----- -- <u>지원</u> , ----- <u>마련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</u> <u>한 지원</u> ----- ----- --
6. 제1호부터 <u>제5호</u> 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<u>지원</u> 및 국내 <u>보완대책</u> <u>마련</u>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<u><신 설></u>	제6조의3(통상피해지원단) ① 위

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 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상피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1. 통상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·분석

2. 통상피해 지원방안의 수립

3. 통상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

4. 통상피해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

5.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파악·점검

6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

③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

에서 통상피해대응과 관련된
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
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2. 제1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통
상피해대응과 관련된 중앙행
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
속하는 일반직공무원

3. 국제금융·통상·해외지역·
국제정치·산업 등 분야별 전
문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
단·대외경제정책연구원·한
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관
련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
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
사람

4. 그 밖에 통상·무역 분야에
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
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
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
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119